

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1-1호

축산물가공처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"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 요령"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.

2001.3.3

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

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중 개정고시

“제8조(검사결과 확인전 신고필증교부대상검사 등) 제1항의 “시행규칙제21조제4항 제1호 및 제3호”를 시행령 제18조의2 제1호로, 동항 제4호 “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”를 “무작위표본검사”로, 동항 제5호 “시행규칙 제21조제4항 제1호 및 제3호”를 “시행령 제18조의 2 제1호”로 한다.

“제11조(표시기준·허위표시등의 확인등) 제1항 제2호의 “시행규칙 제21조제4항 제2호”를 “시

행령 제18조의2 제2호”로 한다.

“제12조(부적합한 수입축산물등의 처리) 제3항의 “수입선박 또는 항공기를 기준”을 “수입신고 건수 기준”으로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신 · 구조문 대조표

현 행	고 시
<p><u>국립수업과학검역원 고시 제2000-2호</u></p> <p>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</p> <p>제8조(검사결과 확인전 신고필증교부 대상 검사 등) ① 관할원장은 <u>시행규칙 제21조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</u>에 의한 축산물의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 라 이를 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4. 관할원장은 <u>정밀검사 또는 무작위 표본검사를 실시</u>한.....</p> <p>.....</p> <p>5. <u>시행규칙 제21조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</u>에.....</p> <p>.....</p> <p>제11조(표시기준 · 허위표시등의 확인 등) ① 관할원장은.....</p> <p>1.(생략)</p> <p>2. <u>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제2호의 규정</u> </p> <p>제12조(부적합한수입축산물등의처리) ①, ②(생략)</p> <p>③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결과 병원성 미생물 또는 유해물질 등으로 부적합판정을 받았거나 국내외 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수입축산물에 대하여는 <u>수입선박 또는 항공기를 기준으로 5회이상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한후</u> 적합한 경우에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</p>	<p><u>국립수업과학검역원 고시 제2001- 호</u></p> <p>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</p> <p>제8조(검사결과 확인전 신고필증교부 대상 검사 등) ① 관할원장은 <u>시행령 제 18조의2제1호의 규정</u>에.....</p> <p>.....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관할원장은 <u>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</u>한.....</p> <p>.....</p> <p>5. <u>시행령 제18조의2 제1호의 규정</u>에.....</p> <p>.....</p> <p>제11조(표시기준 · 허위표시등의확인등) ① 관할원장.....</p> <p>1.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시행령 제18조의2 제2호의 규정</u> </p> <p>제12조(부적합한 수입 축산물등의 처리) ①, 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결과 병원성 미생물 또는 유해물질 등으로 부적합판정을 받았거나 국내외 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수입축산물에 대하여는 <u>수입신고수 기준</u>.....</p> <p>.....</p>